

- (11)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에 대한 감면 신설
- (12) 지방 건설경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‘미분양 안심환매 사업’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신설
- (13)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하고,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상시거주 추징 요건 완화 등
- (14)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은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·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 3년 연장하되
- 납세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거주 추징 요건 완화